

교육연수원 규정

(제정 1996. 9. 2.)

제 1 장 총 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수대상) 연수원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한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분야직무연수, 자격연수, 영어심화연수, 영어TESOL집중연수, 기타 연구과정 등을 운영한다. <개정 2010.6.17>
2. 연수과정에 따른 반은 각각 별도로 편성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원장, 직원) ① 연수원에 원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은 사범대학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사범대학 소속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연수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에 연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연수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책임교수 및 연수에 관계되는 인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③ 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 3 장 연수기간 및 시간

5-2-2-2 교육연수원 규정

제7조(연수기간 및 시간) ①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고, 그 이수시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6.17>

② 자격연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고, 이수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영어심화연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0.6.17>

④ 기타 연수기간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수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⑤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연수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업일) 일요일, 국가공휴일에는 수업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9조(과정별 연수인원) 연수원의 각 과정별 학급당 연수인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수원장이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연수시기) ① 연수원의 연수기간은 당해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수는 하계 및 동계방학 등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시기를 선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입학,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제11조(입학시기) 연수원의 각 분야(전공)별 입학시기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서류제출 및 등록) 연수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이내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13조(1일의 연수시간) ① 연수원의 1일 연수시간은 6시간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과정의 편성) 각 분야(전공)별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이수증서) 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교원연수에관한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한 교육연수이수증(별지 제1호 서식)을 수여한다. <개정 2010.6.17>

제16조(평가) ① 연수원에 입학한 연수생의 연수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표시한다.

③ 평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연수과정 이수자의 이수사항과 성적은 수료 후 연수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0.6.17>

제17조(수료기준) 연수원의 과정별 수료 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성적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총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하고, 그 미만은 낙제로 처리한다.

2. 총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라 할지라도 전체 이수과목의 40% 이상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낙제로 처리한다.

3. 학업성적이 수료사정 기준에 도달한 자 일지라도 총 이수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지 아니하면 낙제로 처리한다.

제18조(학적관리) 연수원장은 연수 이수자의 학적사항을 보존하기 위하여 연수 이수자 명단(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제 5 장 상 별

제19조(표창) 연수원장은 연수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선행으로 표창할 만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① 연수원장은 수강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제적)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을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적 여부를 운영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료 연수를 받게 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적이 불량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2일 이상 결석한 자
4.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5. 기타 연수성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된 자

제22조(재교육금지) 상기 제21조 각 호에 해당되어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재교육을 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5-2-2-4 교육연수원 규정

이 규정은 200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연수 이수증

증서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수과정

이수시간

연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교육연수원장

